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뒤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래는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가 위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위임 내용 (신청내용)	열람	[]등본 사항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등본 사항 전부 포함 []초본 사항 전부 포함		
	등본 교부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직접 입력: 최근 <u> </u> 년 포함
		2. 세대 구성 사유	[]포함
		3. 세대 구성 일자	[]포함
		4. 발생일 / 신고일	[]포함
		5. 변동사유	[]포함(□세대, □세대원)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의 이름	[]포함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본인, □세대원)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9. 동거인	[]포함
	초본 교부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직접 입력: 최근 <u> </u> 년 포함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6. 발생일 / 신고일	[]포함
		7. 변동사유	[]포함
		8. 병역 사항	[]포함(□기본(입영/전역일자), □전체)
		9.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용도 및 목적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되다)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 신청인은 '위임 내용(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 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도 가능)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